
주 제 발 표

제1주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1. 서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

법은 사회 변화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어도 변화된 사회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해 왔다.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나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이 TV가 86.8%, 인터넷(이동형+고정형) 69.7%, 종이신문 25.4%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에서는 ‘이동형 인터넷 뉴스 이용’이 20대 89.7%, 30대 88.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¹⁾ 또한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신청사건 가운데 62.9%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인터넷신문은 1995년 종속형인 중앙일보를 필두로 속속 등장해, 2000년에는 독립형인 오마이뉴스가 만들어졌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을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86개에 불과했다. 포털의 경우,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때가 2000년이고 이를 조정·중재 대상으로 삼은 때는 2009년이다.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법률보완이 누락된

1)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2) <2015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6.

것이다.

침해(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의 수정, 삭제와 기사에 달린 댓글, 기사평글에 대한 구제방안은 이미 그때부터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왔다. 무엇보다 중재위에서 조정신청인들의 인터넷상 기사에 대한 수정, 삭제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근래에 요구의 정도가 강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인터넷기반 매체의 처리결과 중 기사가 삭제 또는 수정된 건이 26%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법제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듯 현행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TV 등을 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방안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한 번 보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일회적인 보도를 상정하여 원 보도 이후 별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만을 언론보도 피해자의 구제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³⁾인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이 보이고 있다. 정정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 기사가 인터넷 곳곳에 잔존하여 그릇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언론피해의 확산과 그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보도에 한해 적용되는 새로운 권리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할 수 있는 침해배제청구권이 그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모든 언론매체에 적용되는 권리라면,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는 인터넷기반 매체에만 적용된다. 기존 신문, 잡지나 방송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구할 수 없고 오직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신문 등을 대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위법·침해적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다면 진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3)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전원재판부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 구제된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경우 피해자가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도록 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중재위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정이나 삭제 등으로 구제가 확정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중재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댓글의 삭제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인터넷기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잘못된 원 보도의 전파와 검색으로 인한 피해와 위법한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까지 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 각계와 국민의 인식

개정안은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나 일부 언론계와 언론학자는 개정안에 대해 불신과 우려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개정안대로라면 중재위에서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삭제 등을 구하거나 중재위가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중재위가 기존의 ‘중재’ 역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인터넷 댓글의 삭제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검열기구”⁴⁾가 될 것, “중재위가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도”⁵⁾, “SNS게시물을 중재위가 알아서 삭

4) 최진봉, “언론중재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행위”, 노컷뉴스, 2015. 12. 3.

제”6), “기사삭제는 국제표준이 아니다”7) 등의 주장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중재위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중재위는 언론보도 분쟁의 양당사자를 조정하는 기구로,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모든 조정은 피해자의 조정신청이 제기 된 후에야 개시되며, 기사나 기사댓글의 삭제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중재위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적 글을 심의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이미 독일에서 학설상 확립된 개념으로 판례에 의해 발전돼 왔고 영국은 최근 제정된 명예훼손법에서 명예훼손적 진술의 삭제 및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우리 대법원과 각국의 판례와 지배적인 학설을 참고,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논란이 없고 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안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 60950) 이후, 각 심급별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인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표 1〉 최근 우리 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용사건 현황

번호	판결번호	법원	심급	청구명	침해 유형	원고	사건 피고명	매체명	결과
1	2014나 2016492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사생활	000 외 5명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조선일보/ 조선닷컴	인용
2	2014나 24114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초상/ 사생활	000 외 5명	(주)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인용
3	2015카합 50147	서울 서법	1심	기사 삭제/ 보도 금지	명예/ 신용	한국 석유공사	(주)코리아 타임스	인터넷 코리아 타임스	인용
4	2015나 2046025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초상/ 사생활	000	(주)조선 방송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인용
5	2014나 43078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인터넷 한국일보 외 3명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인용

5) 최진봉, 위의 글.

6) “SNS 게시물, 이제 중재위가 알아서 삭제?”, 미디어스, 2016. 11. 9.

7) 문소영,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년 통권 76호

번호	판결번호	법원	심급	청구명	침해 유형	원고	사건 피고명	매체명	결과
6	2015나 2060748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초상	000	(주)이엠디 외 1명	법무경찰 신문	인용
7	2015가합 101543	서울 남법	1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주)문화 방송	(주)미디어 오늘 외 6명	인터넷 미디어 오늘	인용
8	2015나 2008030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사단법인 민주연론 시민연합	(주)채널 에이 외 1명	채널A/ 인터넷 채널A	인용
9	2015가합 11183	순천 지원	1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학교법인 청암학원 외 1명	(주)미디어 실크에이 치제이 외 1명	인터넷 미디어 워치/ 데일리 저널	인용
10	2015나 2046919	인천 지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천지 일보	뉴스천지	인용
11	2016다 207850	대법원	3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사회복지 법인 00 외 4명	(주)뉴스1 외 3명	뉴스1/ OBS/ 인터넷 OBS	인용
12	2015다 241303	대법원	3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세계 닷컴 외 7명	세계닷컴/ 세계일보/ TV조선/ MBN	인용

잘못된 인터넷 기사를 수정·보완하거나 삭제를 구하는 권리인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을 기사삭제에만 국한시키며,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과거에는 적법했던 보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 마련”이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배제청구권은 단순히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라고 해서 과거 언론 보도를 삭제”하자는 것⁸⁾이 아니다. 명백히 잘못된 인터넷 기사의 경우, 원 보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즉, 실형을 받은 사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무죄판결

8) 문소영,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년 통권 76호

을 받았다면 원 보도를 보완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실을 덧붙이자는 취지이다.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오해는 기사삭제를 단지 스페인 곤잘레즈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구글 링크삭제’ 판결을 토대로 한 ‘잊혀질 권리’와 연관 짓는 데서 발생한다. 정보보호법상 잊혀질 권리는 원래 적법하게 제공되거나 생성된 정보의 삭제 내지 보완에 관한 것이지만 침해배제는 허위 또는 핵심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사후에 부정확하게 된 정보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위 사건에서 ECJ의 판단근거였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5) 혹은 2018년 발효 예정인 일반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모두 사이버상 떠도는 합법적인 개인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언론보도는 그것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보보호법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허위기사는 언론법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보보호법제상의 삭제, 정정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아울러 위 사건에서 ECJ는 언론사(스페인, Lavanguardia Ediciones SL)의 기사삭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바가 없다.

기사댓글은 인터넷의 기능적 상호작용성에서 기인한 미디어활동의 일부다. 하나의 기사에 수십, 수천 건의 댓글이 붙고 있는 온라인 기사게시판은 인터넷 양방향 구조가 새롭게 만든 거대한 ‘독자마당’인 셈이다. 댓글이 기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사의 신뢰도와 노출빈도에서 그렇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기사댓글은 정보통신망상의 단순한 정보가 아닌 광의의 미디어콘텐츠로서 언론중재법의 조정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뉴스포털 델피(Delfi)의 댓글 판결에서도 댓글이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지만 그것은 인터넷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해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델피의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였고, 이러한 UGC(user-generated content)도 공적 사이트에 게시되면 그 기사와 같은 파급력을 갖게 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을 제거하지 않은 사이트관리자는 게시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2008다53812)도 이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다. 포털 등 사이트관리자의 당사자적격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CMA),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등 국제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일부 언론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해 언론계의 진단과 상당히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재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랩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⁹⁾ 결과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피해구제책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준다.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9명(89.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86.1% 이상은 잘못된 기사가 카페, 블로그 등에 전파된 복제기사나 기사에 달린 명예훼손적 댓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제기사나 기사댓글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서비스를 중재위가 제공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각각 84.6%, 90.6%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현장 기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도 개정안에 대한 날선 시각의 비판적 논조의 기사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 2015년 중재위가 그 해 언론조정신청 사건 당사자인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언론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¹⁰⁾ 조사결과 피신청인 응답자의 58.6%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가 가능한 새로운 피해구제방법인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 권리에 대한 언론인의 거부감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응답자의 74.6%가 동의하였으나, 중재위 조정대상에 기사댓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45.9%만이 찬성했다.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에서 구제 받도록 하는 데에 신청인은 10명 중 8명(82%)이 찬성한 반면, 피신청인은 절반 정도만 찬성하여 양 당사자 간 온도차를 보였으나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30.4%)보다 찬성하는 의견(47.5%)이 훨씬 많았다.

9)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pm 3.1\%$

10) 중재위는 해마다 중재위를 이용한 언론보도 피해자인 신청인과 언론사측 대리인으로 조정에 참석한 언론사 데스크 등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가.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 제공과 언론보도 신뢰성 제고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국민들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 가장 실효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언론은 원 기사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이 언제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별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한하여 원 기사를 수정해 줄 것을 중재위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 입장에서든 부분적인 사실관계의 잘못을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원 기사를 통해 바로잡는다면 언론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제33조의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중대하게”, “핵심영역”, “명백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침해배제청구권 행사의 남용을 막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비교 형량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나. 언론분쟁의 일괄적인 해소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개정안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피해에 대해 중재위를 통해 일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지만 침해배제청구라는 권리를 추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 기사를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원 기사가 이

미 인터넷 곳곳에 전파된 경우 해당 기사를 퍼 나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원 기사가 정정보도 되었거나 수정,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를 비난한 위법한 기사댓글에 대해서도 함께 중재위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창구에서 제반 분쟁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신문이 열정페이 운운하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성추행까지 했으며 편의점 전경 사진까지 보도하였다. 원보도와 이를 매개한 포털뉴스의 댓글란은 A씨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으며, 블로그나 카페에 편의점 사진과 함께 이 기사를 퍼나른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고 포털 검색을 통해 상당수 기사게시물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편의점주의 잦은 욕설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①잘못된 인터넷신문 기사와 기사댓글 ②포털에 매개된 기사와 기사댓글 ③잘못된 기사를 퍼 나른 복제기사 ④검색으로 인한 게시물 노출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 시행 전후로 비교해 보자.

〈표 2〉 개정안 시행 전후 비교

피해유형	개정안 시행 전	개정안 시행 후
① 잘못된 인터넷신문 기사와 기사댓글	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인터넷신문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다. 기사댓글은 조정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정과정에서 인터넷신문사가 기사댓글 삭제에 대해 협조해줄기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잘못된 원 보도가 인터넷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였다.	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와 인터넷신문 보도인 만큼 침해배제청구를 하여 인터넷신문에 정정보도가 별도로 게재되고, 원 보도 내용도 수정하거나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삭제되었다. 또,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포털에 매개된 기사와 기사댓글	포털사를 상대로도 조정신청하여 포털에도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으나 기사댓글은 현행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포털사에 직접 신고해야 했다.	인터넷신문사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포털사가 매개한 기사는 수정, 삭제된 기사로 대체되었고 포털 뉴스 기사란의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삭제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져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피해유형	개정안 시행 전	개정안 시행 후
③ 잘못된 기사를 퍼 나른 복제기사	중재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블로그나 카페의 사이트 관리자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중재위에 해당 기사를 퍼 나른 카페나 블로그 등의 URL을 제시했더니 중재위에서 인터넷신문사와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정안을 작성, 카페나 블로그의 사이트 관리자인 포털에 제시하여, 해당 기사를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④ 검색으로 인한 게시물 노출	인터넷신문사의 협조를 구해 검색사업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검색으로 인해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고 중재위에 이야기했더니 인터넷신문사와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중재위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위의 표와 같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는 현재 인터넷신문과 포털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욕설과 모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 등에 국한하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댓글은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과 관계된 댓글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기사댓글의 인격권 침해여부는 중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사례와 같이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초래되는 파생 피해까지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오늘날 언론보도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눈과 귀로 전달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면과 전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뉴스플랫폼을 통해 자사 기사를 전달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언론사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는 자사 기사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팟캐스트를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뉴스편당이나 뉴스 큐레이션 등과 같이 뉴스의 형태가 새로이 진화되면서 기존 언론의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그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시도는 무력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의 생산주체가 대중화되고 전달 경로는 다원화되면서, 다종다양한 뉴

스플랫폼이 법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조항으로 정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¹¹⁾을 하면서 1인 미디어도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게재 기사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면 취재편집 인력이 몇 명이건 관계없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취재·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언론의 기능을 지니고 역할을 한다면 1인 미디어도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개정안은 다양한 뉴스플랫폼과 새로운 유형의 기사형식, 전달방식 등의 등장을 고려하여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의 표현물까지 중재위가 삭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¹²⁾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SNS에 올린 개인의 일반적인 표현물이나 정치적 의사표현물은 중재위의 조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다. 법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데 굳이 중재위가 나서 조정을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의 성격’을 지닌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정보’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법적 언론의 지위를 지니지 않았으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언론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플랫폼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구제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법적 언론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기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대상에 기사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보도’에 대해 사후 심의나 삭제가 심의를 통해 이루어

11)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등 위헌 확인

12) “새누리당, 페이스북 게시물도 삭제할 수 있는 법안 냈다”, 미디어오늘, 2016. 11. 9. 페이스북 게시물까지 중재위가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지게 되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언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안이다.

5. 결론

인터넷기반 매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정 등 보도문과 함께 원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어떤 법에도 원기사의 수정·삭제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허위보도로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최상의 구제책은 지난 오보를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기사를 수정·삭제하는 것이다. 거기에 피해를 부추기는 악성댓글이나 퍼 나른 글까지 삭제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중재위를 통해 처리된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삭제의 비중을 보면 2011년 36.5%를 비롯하여 매년 거의 20%를 넘고 있다. 이는 기사삭제가 현행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 이들 사건 1,635건 중 88.7%인 1,450건이 정정 등 여타의 구제 없이 기사삭제만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정과정에서 언론사와 신청인간의 입장이 고려된 결과로써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의 흔적과 금전적 부담을 피하는 이점을, 신청인은 당장 문제의 기사가 사라진다는 일시적 만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기반 매체가 주류를 이루는 미디어환경에서 기사의 수정·삭제는 피해자가 원하는 주된 피해구제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기반 매체 중 인터넷신문만 보더라도 6천종이 넘어섰다. 기존의 전통매체들도 인터넷기반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이들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달리는 댓글게시판은 거대한 독자마당이 되어 있고, 수많은 개별 블로그도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뉴스매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언론피해구제제도는 아직도 아날로그법제에 갇혀있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할 자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도의 보완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가 입법미비상태의 해소를 위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법치주의
실현의 요체다.